

동물용의약품등을 광고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(제44조제2항 관련)

1. 공통사항

- 가. 동물용의약품등의 명칭, 제조방법 또는 용법 등에 관하여 법 제31조·제42조, 「의료기기법」 제6조제2항·제15조제2항 및 「체외진단의료기기법」 제5조제3항·제11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 외의 광고를 하지 말 것. 다만, 수의학적·약학적으로 공인된 범위 안의 임상결과 등 근거문헌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이 경우 인용문헌의 본뜻을 정확히 전달하여야 하며, 연구자의 성명·문헌명과 발표연월일을 명시하여야 한다.
- 나. 효능 또는 성능 등에 관하여 공인된 사항 외의 광고를 하지 말 것
- 다. 인체약품, 인체용 의료기기 또는 인체용 체외진단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게 하거나 사용할 수 있음을 표시 또는 암시하는 광고를 하지 말 것
- 라. 효능 또는 성능에 있어서 우수한 치료효과를 나타낸다는 내용 등으로 그 사용결과를 표시 또는 암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동물용의약품등의 사용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유인하는 광고를 하지 말 것
- 마. 동물용의약품등에 관하여 의사, 동물관계학자 그 밖의 자가 이를 지정·공인·추천 또는 선용하고 있다는 광고를 하지 말 것
- 바. 다른 동물용의약품등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될 광고 또는 다른 제품과 유사하다거나 보다 우수하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지 말 것. 다만,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다른 제품과의 비교실험결과를 인정한 내용을 비교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사. 국산제품임에도 외국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외국어로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외국 상표를 사용한 광고 또는 외국의 제조업자와 기술제휴를 한 것임을 표시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지 말 것. 다만 법령에 따라 외국 상표를 사용하였거나 외국의 제조업자와 기술제휴를 한 것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.
- 아. 동물용의약품등을 오용 또는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말 것
- 자. 현상품 및 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는 방법에 의한 광고를 하지 말 것
- 차. 옥외광고를 하는 때에는 제품명, 제조업소명 및 효능·효과만을 표시할 것
- 카. 노래가사에 제품명을 사용한 광고, 연이어 부르는 방법에 의한 광고 또는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을 한 광고를 하지 말 것

2. 동물용의약품

- 가. 사실과 다르거나, 부분적으로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말 것
- 나. 효능이나 성능을 광고함에 있어서 사용 전·후의 비교 등으로 그 사용결

과를 표시 또는 암시하거나 적응증상을 위협적인 표현으로 표시 또는 암시하는 광고를 하지 말 것

다. 사용자의 감사장 또는 체험담을 이용하거나 구입·주문채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하지 말 것

라. 효능·효과를 광고함에 있어서 "이를 확실히 보증한다"라는 내용 등의 광고 또는 "최고", "최상" 등의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하지 말 것

마. 주성분이 아닌 성분의 효능 및 효과를 표시하는 광고를 하지 말 것

바. 부작용이 있는 동물용의약품에 있어서 그 부작용을 부정하는 표현 또는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의 광고를 하지 말 것

사. 동물용의약품을 동물용의약품이 아닌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말 것

아. 동물용의약품의 효능·효과와 관련되는 병의 증상이나 수술장면을 위협적으로 표시하는 광고를 하지 말 것

자.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·식물의 가공품임을 표현 또는 암시하는 광고를 하지 말 것

3. 동물용의약외품, 동물용의료기기 또는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

가. 자기 회사 또는 제품에 관한 광고시 규모·인력·생산시설·수상경력·사업계획·사업실적 및 기술제휴 등에 관한 사항을 사실대로 광고할 것

나.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나 성분에 관한 사항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사실대로 광고하여야 하며,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말 것

다. 품질 및 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아니한 사항을 광고하지 말 것

라. 경쟁상품에 관한 비교표시는 사실대로 하여야 하며, 배타성을 띤 "최고" 또는 "최상" 등의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하지 말 것

마. 동물용의료기기 또는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를 동물용의료기기 또는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가 아닌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말 것

바. 동물용의약외품을 동물용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말 것

사. 사용자의 감사장 또는 체험담을 이용하거나 구입·주문채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하지 말 것